

## 카드부정사용보상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기타) - 기타

2. 보험종목의 명칭 : 카드부정사용보상보험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비용손해

: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부정사용)으로 인한 금전 손해

나. 동산

4. 보험기간

가.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특약이 부가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상품다수구매자(피보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보장내용(불완전판매 우려가 적고 보험 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상품)으로 설계한다.

② 보험료는 계약자(상품판매자)가 전액 부담\*한다.

\* 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인수함

③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주요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피보험자 확인\*을 받은 경우에 인수한다.

\* 가입 전 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후 설명 및 확인함

다. 단체보험계약에 한하여 인수한다.

라.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신규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 서비스 등)의 경우, 아래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인수한다.

가) 카드 가입신청서에 보험가입에 관한 안내 문구를 명시하고,

나) 카드회원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체크박스)를 표기함

[카드 가입신청서 안내 문구 예시]

XX카드는 카드회사가 대표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권리, 의무는 카드회사가 행사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XX카드가 부담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카드회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기존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서비스 등)의 경우,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내용을 카드회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 인수한다.

마.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관련사항

① 특약의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특약의 적용범위 :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③ 기타

가)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나)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Chubb. Insured.™